

『新唐書』 권81, 高宗諸子傳 譯註*

藤 豆 豆 **

I. 燕王 李忠¹⁾

燕王 [李]忠(643~664)²⁾은 字가 正本³⁾으로, [고종의 장자이다.]⁴⁾ [태종 정관 17년(643)] 황제(즉 고종)가 비로소 태자가 되었는데 [11월 갑진일 (28일)에] 이충이 태어나자 궁중(즉 東宮 弘教殿)⁵⁾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中華書局標點本, 3586쪽, 3588~3591쪽의 燕王忠傳, 孝敬皇帝弘傳, 章懷太子賢傳을 역주한 것이다. 원문을 병기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경우에는 [], 용어를 설명할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고, 중국 정사는 中華書局標點本을 이용하였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1) 당 고종의 황태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雷豔紅, 「唐代君權與皇族地位研究」, 廈門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등 참조.

2)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高宗八子, 後宮劉生忠, 鄭生孝, 楊生上金, 蕭淑妃生素節, 武后生弘·賢·中宗皇帝·睿宗皇帝”(3585쪽).

3) 『冊府元龜』 권258, 「諸宮部」3, 誕慶, 鳳凰出版社, 2931쪽에는 “字正奉”이라고 한다.

4) 『舊唐書』 권86, 「燕王忠傳」, “字正本, 高宗長子也”(2823쪽).

5) 東宮의 正殿인 嘉德殿 북쪽의 전각으로, ‘崇教殿’이라고도 한다. 즉 (元) 駱天驥의 『類編長安志』 권2, 宮殿室庭, 唐, 東宮에는 “東宮正殿曰明德殿, 本名嘉德殿. … 崇教殿在明德殿北, 宮內殿也. 本名弘教, 長安二年, 改爲崇教殿”(三秦出版社, 62쪽)이라고 하고, (清) 徐松의 『唐兩京城坊考』 권1, 西京·宮城에는 “東宮, … 宮之正殿曰嘉德殿, … 嘉德殿之北爲崇教殿[或作崇政, 誤. 『唐會要』, ‘貞觀十七年十一月二十八日, 誕皇太孫, 太子宴宮僚於弘教殿. 太宗幸東宮, 自殿北門入.’ 『禁扁』,

이윽고 태종이 친림하여 [홍교전의 북문으로 들어서자, 태자가 섬돌 아래로 내려가 舞蹈하며 萬歲를 불렀다.] [태종이] 宮臣들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길, “짐에게 비로소 손자가 생겼으니, 함께 즐기고자 한다.”라고 하자, [모두 만세를 불렀다.] 주연이 무르익자 황제(즉 태종)가 일어나 춤추며 羣臣들에게도 권하자 자리에 있던 자들이 모두 춤을 추었고, [태종이 각각] 차등을 두어 [비단을] 하사하였다.⁶⁾ 정관 20년(646) [8월] 비로소 陳王이 되었다.⁷⁾ [고종] 영휘 원년(650) [정월] 雍州牧에 배수되었다.⁸⁾ 王后에게 자식이 없어 황후의 외삼촌인 柳奭이 황후에게 말하길 ‘이층의 모친이 미천하므로 그를 [황태자로] 세우면 필시 자신을 가까이한다고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자, 황후가 그럴 듯하게 여겨 황제에게 청하였다. 또 유석이 褚遂良·韓瑗·長孫无忌·于志寧 등과 함께 잇달아 청하자, [영

‘崇教，一日弘教，又有弘教門’·麗正殿.”(中華書局, 7~8쪽)이라고 한다. 당대 동궁의 구조에 대해서는 최재영, 『隋唐長安城 東宮의 구조와 성격—魏晉南北朝都城의 東宮과 연관하여』, 『역사와 세계』 51, 2017(이후 『한국과 동아시아 동궁 연구』, 역사산책, 2018 수록) 참조.

- 6) 『책부원구』 권47, 「帝王部」47, 慈愛, “十七年十一月甲辰, 誕皇孫, 太子宴宮寮於弘教殿. 帝幸東宮, 自殿北門而入, 太子自投階下, 舞蹈稱萬歲. 帝謂功(宮?)臣曰, ‘頃來生業稍可, 非乏酒食, 而唐突公等宴會者, 朕因甲觀之慶, 故就公爲樂耳.’ 咸稱萬歲, 酒酣, 帝起舞, 群臣竝舞, 樂極而罷, 賜物各有差”(510쪽). 『舊唐書』 권86, 「燕王忠傳」, 2823~2824쪽; 『책부원구』 권109, 「帝王部」109, 宴享1, 1192쪽; 『책부원구』 권258, 「諸宮部」3, 誕慶, 2931~2932쪽 略同. 한편, 『唐會要』 권67, 「詹事府」에는 “十七年十一月二十八日, 誕皇太孫, 太子宴宮寮於宏教殿. … 謂太子曰, ‘爾國之儲貳, 府藏是同, 金玉綺羅, 不足爲賜. 但先王典籍, 可鑑誠耳’ 因賜『尚書』·『毛詩』·『孝經』各一部. 太子太傅蕭瑀曰, ‘今所賜書, 請陳其要’. 上許之. 瑀乃先說『孝經』, 次述『尚書』, 末紱『毛詩』, 咸舉其要旨, 申明義趣, 可爲深誠者, 皆委曲言之. 上大悅, 以爲師傅得人”(上海古籍出版社, 1380~1381쪽)라고 한다. 『당회요』 권4, 「皇太孫」, 55~56쪽 略同.
- 7) 『구당서』 권3, 「太宗本紀」下, 정관 20년(646) 8월 조, “甲子(5일), 封皇孫忠爲陳王”(59쪽); 『신당서』 권2, 「태종본기」, 동년 동월 조, 45쪽.
- 8) 『구당서』 권4, 「高宗本紀」上, 영휘 원년(650) 정월 조, “丙午(6일), 立妃王氏爲皇后. 丁未(7일), 以陳王忠爲雍州牧”(67쪽).

휘 3년(652) 7월] 마침내 황태자에 책립되었다.⁹⁾ [영휘 6년(655) 2월 元服을 더하였고, 제서를 내려 大辟罪 이하는 모두 1等を 낮추었고 3일 간 大酺하였다.]¹⁰⁾ [10월] 왕황후가 폐위될 때¹¹⁾ 武后의 아들 [李]弘이 겨우 3살이었음에도 [11월] 許敬宗이 무후의 뜻에 영합하고자 “나라에 적자[正嫡]가 있으니 태자는 마땅히 漢 劉彊의 故事¹²⁾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 황제가 허경종을 불러 말하길 “적자를 세워야 함은 어찌서인가?”라고 하자, [허경종이] 대답하여 말하길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만사가 다스려질 것이니, 태자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게다가 동궁은 출신이 미천하여 지금 적자가 있음을 알고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태자의] 자리를 훔쳐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으니, [이는] 社稷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층은 이미 스스로 양보하였다.”라고 하자, 허경종이 말하길 “능히 太伯¹³⁾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또

9) 『구당서』 권86, 「연왕충전」, “時王皇后無子, 其舅中書令柳奭說后謀立忠爲皇太子, 以忠母賤, 冀其親己, 后然之. 奭與尚書右僕射褚遂良·侍中韓瑗諷太尉長孫無忌·左僕射于志寧等, 固請立忠爲儲后, 高宗許之. 三年, 立忠爲皇太子, 大赦天下, 五品已上子爲父後者賜勳一級”(2824쪽); 『資治通鑑』 권199, 고종 영휘 3년(652) 7월 조, “丁巳(2일), 立陳王忠爲皇太子, 赦天下. 王皇后無子, 柳奭爲后謀, 以忠母劉氏微賤, 勸后立忠爲太子, 冀其親己, 外則諷長孫無忌等使請於上, 上從之”(中華書局, 6278쪽).

10) 『구당서』 권86, 「연왕충전」, 2824쪽. 『책부원구』 권84, 「帝王部」84, 赦宥3, 영휘 6년(655) 2월 조, 927쪽 略同. 한편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동년 동월 조에는 “乙巳(5일), 皇太子忠加元服, 内外文武職事五品已上爲父後者, 賜勳一級. 大酺三日”(74쪽)라고 한다.

11)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0월 조, 6293~6295쪽.

12) ‘劉彊’은 後漢 光武帝의 장남으로, 건무 2년(26) 모후 郭氏가 황후에 오르자 황태자에 책립되었는데, 건무 17년(41) 황후 광씨가 폐위되자 건무 19년(43) 황태자의 지위를 사양하였다. ‘劉彊故事’란 이를 가리키는데, 즉 『後漢書』 권42, 「東海恭王彊傳」에는 “建武二年, 立母郭氏爲[皇]后, 彊爲皇太子. 十七年而郭后廢, 彊常感不自安, 數因左右及諸王陳其懇誠, 願備蕃國. 光武不忍, 遲回者數歲, 乃許焉. 十九年, 封爲東海王”(1423쪽)라고 한다.

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¹⁴⁾ 이에 [영휘 7년(656) 정월] 梁王·梁州都督으로 降封하고 甲第 [1區], 實封 2千戶, 比田[物] 2萬 段을 하사하였다.¹⁵⁾ 이윽고 [같은 해]¹⁶⁾ 房州刺史로 옮겨졌다. 이충은 점차 [장성하면서] 두렵고 불안하여 婦人의 옷을 입고 刺客에 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차 악몽(妖夢)을 꾸게 되자 늘 자신의 길흉을 점쳤다. [현경 5년(660) 7월] 일이 발각되어 庶人으로 폐위되었고 黔州 [李]承乾의 故宅에

- 13) ‘太伯’은 周太王 古公亶父의 장남으로, 高公단보가 3남 季歷의 아들인 昌(즉 周文王)이 주나라를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력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荊蠻으로 달아나 계력에게 군주의 지위를 양보하였다. 즉 『史記』 권4, 『周本紀』에는 “古公有長子曰太伯, 次曰虞仲. 太姜生少子季歷, 季歷娶太任, 皆賢婦人, 生昌, 有聖瑞. 古公曰, ‘我世當有興者, 其在昌乎?’ 長子太伯·虞仲知古公欲立季歷以傳昌, 乃二人亡如荊蠻, 文身斷髮, 以讓季歷”(115쪽)라고 한다.
- 14) 『당회요』 권4, 『諸君』, 燕王忠 조, “[永徽]六年十一月, 武后既立, 禮部尙書許敬宗奏曰, ‘臣聞元儲以貴, 立嫡之義尤彰, 罔敢同名, 正本之文愈顯, 既而皇后生子, 合處少陽, 出自塗山, 是爲吾君之胤, 夙嫺胎教, 宜展問豎之心, 乃復爲孽奪宗, 降居藩邸. 臣以愚誠, 竊所未喻, 且今之守器, 素非皇嫡, 永徽爰始, 國本未生, 權引彗星, 越升明兩. 近者元妃載誕, 正胤降神, 重光日融, 燭火宜息. 安可以濫茲皇統, 叨據大器! 國有諍臣, 孰逃其責. 竊惟息姑克讓, 可以思齊, 劉彊守藩, 宜遵往軌, 追蹤太伯, 不亦可乎, 踵武延陵, 固當安矣. 寧可反植枝幹, 久易位于天庭, 倒襲衣裳, 使違方于震位! 蠢爾黎庶, 云誰繫心, 垂裕後昆, 將何播美? 且父子之際, 人所難言, 事或犯鱗, 必嬰嚴憲. 伏自思忖, 荷眚前朝, 引于陋巷之中, 申以後車之禮. 雲臺畫像, 十有八人, 三紀于茲, 惟臣僅在, 常思勉力, 少報鴻恩. 今茲冢嗣執珪, 下文當璧, 孟侯淪屈, 大典未申, 臣既分職文昌, 典司嘉禮, 位陪宗伯, 不敢曠官, 效命之秋, 宜在茲日.’ 及召見, 上曰, ‘卿朕之伯夷, 立嫡之義, 在禮何如?’ 對曰, ‘正國本則萬事理, 皇太子國之本也, 本猶未正, 萬國無以繫心. 東宮者所出本微, 今知國家已有正嫡, 必不自安. 竊位而懷疑, 恐非宗廟之福也, 願陛下熟計之.’ 上曰, ‘忠已自讓.’ 對曰, ‘能爲太伯, 願速從之.’”(45~46쪽).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1월 조, 6295쪽.
- 15) 『자치통감』 권200, 현경 원년(656) 정월 조, “辛未(6일), 以皇太子忠爲梁王·梁州刺史, 立皇后子代王弘爲皇太子, 生四年矣. 忠既廢, 官屬皆懼罪亡匿, 無敢見者, 右庶子李安仁獨候忠, 泣涕拜辭而去. 安仁, 綱之孫也”(6296쪽). 『唐大詔令集』 권31, 皇太子·退讓, 『降太子忠爲梁王詔』, 中華書局, 121~122쪽.
- 16) 『구당서』 권86, 『연왕충전』, “顯慶元年, … 其年, 轉房州刺史”(2824쪽).

감금되었다.¹⁷⁾

인덕 연간(664~665) 초 환관[宦者] 王伏勝이 무후에게 죄를 언자 허경종이 마침내 이충 및 上官儀가 왕복승과 함께 謀反하였다고 무고하여 [인덕 원년(664) 12월 유배지에서] 賜死되니, 나이 22세였다.¹⁸⁾ 자식은 없었다. 이듬해(665) 태자 이흥이 表를 올려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길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중종] 신룡 연간(705~707) 초 [燕王에] 追封되었고, 또 太尉·揚州大都督에 추증되었다.

II. 孝敬皇帝 李弘¹⁹⁾

孝敬皇帝 [李]弘(652~675)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다].²⁰⁾ [고종] 영휘 6년(655) [정월] 처음 代王이 되었는데, 潞王(즉 이후의 章懷太子)과

17) 『자치통감』 권200, 현경 5년(660) 7월 조, “房州刺史梁王忠, 年浸長, 頗不自安, 或私衣婦人服以備刺客, 又數自占吉凶. 或告其事, 秋, 七月, 乙巳(6일), 廢忠爲庶人, 徙黔州, 囚於承乾故宅”(6321쪽). 『당대조령집』 권39, 諸王·降黜, 「黜梁王忠庶人詔」, 179쪽.

18) 『자치통감』 권201, 인덕 원년(664) 12월 조, “初, 武后能屈身忍辱, 奉順上意, 故上排羣議而立之, 及得志, 專作威福, 上欲有所爲, 動爲后所制, 上不勝其忿. 有道士郭行眞, 出入禁中, 嘗爲厭勝之術, 宦者王伏勝發之. 上大怒, 密召西臺侍郎·同東西臺三品上官儀議之. 儀因言, ‘皇后專恣, 海內所不與, 請廢之.’ 上意亦以爲然, 即命儀草詔, 左右奔告于后, 后遽詣上自訴. 詔草猶在上所, 上羞縮不忍, 復待之如初, 猶恐后怨怒, 因給之曰, ‘我初無此心, 皆上官儀教我.’ 儀先爲陳王諮議, 與王伏勝俱事故太子忠, [胡三省注: 忠自陳王立爲皇太子, 王府諮議參軍, 正五品上, 掌訐謔左右] 后於是使許敬宗誣奏儀·伏勝與忠謀大逆. 十二月, 丙戌(13일), 儀下獄, 與其子庭芝·王伏勝皆死, 籍沒其家. 戊子(15일), 賜忠死于流所. … 自是上每視事, 則后垂簾於後, 政無大小, 皆與聞之. 天下大權, 悉歸中宮, 黜陟·殺生, 決於其口, 天子拱手而已, 中外謂之二聖.”(6342~6343쪽).

함께 봉해졌다.²¹⁾ 현경 원년(656) [정월] 황태자에 책립되었다.²²⁾ [이홍은] 率更令 郭瑜에게서 『春秋左氏[傳]』을 배웠는데, 楚世子 商臣이 그 부왕을 시해하였다는 [구절²³⁾]에 이르자 탄식하면서 책을 덮으며 말하길 “聖人께서 교훈을 전하면서 어찌 이를 기록한 것입니까?”라고 하자, 곽유가 말하길 “孔子께서는 『春秋』를 지을 때 善惡을 반드시 기록함으로써 선업을 칭찬[褒]하여 권면하였고 악업을 비난[貶]하여 경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신의 죄가 비록 천년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홍이 말하길 “그러나 차마 듣고 있을 수 없으니, 다른 책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곽유가 배례하며 말하길 “마음의 이름이 ‘勝母’라 하여 曾子께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²⁴⁾ 殿下

19) 武則天和 李弘·李賢의 관계에 대해서는 劉方玲, 「武後地位的上升與宮廷文化學術活動的關係論析」, 『燕山大學學報』 2003-4; 趙文潤, 「武則天與太子李弘·李賢的關係考釋」, 『唐史論叢』 9, 2007; 趙英華, 「武則天與李弘·李賢之關係探微」, 『遼寧行政學院學報』 2008-3; 司海迪, 「武則天的人格與重要人際關係考論」, 武漢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등 참조.

20) 『구당서』 권86, 「孝敬皇帝弘傳」, “孝敬皇帝弘, 高宗第五子也”(2828쪽).

21)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전」에는 “永徽四年, 封代王”(2828쪽)이라고 하지만,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73쪽에 의하면, 李弘이 代王에 봉해진 것은 영회 6년(655) 정월이다.

22)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현경 원년(656) 정월 조, 75쪽. 『당대조령집』 권27, 皇太子·立太子, 「立代王爲皇太子詔」, 93쪽; 『당대조령집』 권28, 皇太子·冊文, 「冊代王爲皇太子文」, 98쪽.

23) 『春秋左傳』 「文公元年」, 【經】冬, 十月, 丁未, 楚世子商臣弑其君顛. [杜預注: 商臣, 穆王也. 弑君例在宣四年.] 【傳】初, 楚子將以商臣爲太子, 訪諸令尹子上. …冬, 十月, 以宮甲圍成王. 王請食熊蹯而死, 弗聽. 丁未, 王縊. 諡之曰‘靈’, 不暝, 曰‘成’, 乃暝.”(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編, 『春秋左傳正義』 권18, 「文公元年至四年」, 北京大學出版社, 2000, 556쪽, 560~561쪽). 이하, 十三經注疏는 北京大學 十三經注疏整理本 이용.

24) 『史記』 권83, 「鄒陽傳」, “鄒陽者, 齊人也. …鄒陽客游, 以讒見禽, 恐死而負累, 乃從獄中上書曰, ‘…臣聞盛節入朝者不以利汙義, 砥厲名號者不以欲傷行, 故縣名勝母而曾子不入, [『索隱』: 按, 『淮南子』及『鹽鐵論』並云里名勝母, 曾子不入, 蓋以

께서는 효성[睿孝]을 본래부터 타고나시어 흉악하고 궤역한 일을 물리치며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하십니다. 신이 듣기로 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禮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공자께서 ‘예를 배우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다’²⁵⁾고 하셨던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禮記』를 배우소서.”라고 하였다. 태자가 말하길 “좋습니다.”라고 하였다.²⁶⁾ [현경] 4년(659) [10월] 元服을 더하였다.²⁷⁾ [용삭 원년(661)] 다시 [中書令·太子]賓客 許敬宗, [侍中·兼太子]右庶子 許圜師, 中書侍郎 上官儀, [太子]中舍人 楊思儉에게 명하여 文思殿에 나아가古今文章을 채록[擿采]하게 하고 『瑤山玉彩』라 불렀는데, 무릇 500篇이었다.²⁸⁾ [용삭 3년(663) 10월] 책을 상주하니, 황제가 비단[物] 3만 단을 하

名不順故也。尸子以爲孔子至勝母縣，暮而不宿，則不同也。] 邑號朝歌而墨子回車。…’ 書奏梁孝王，孝王使人出之，卒爲上客”(2469~2478쪽).

- 25) 『論語』「季氏」,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嘗獨立, 鯉趨而過庭。曰, ‘學詩乎?’ 對曰, ‘未也。」「不學詩, 無以言。」「鯉退而學詩。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曰, ‘未也。」「不學禮, 無以立。」「鯉退而學禮。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 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編, 『論語注疏』 권16, 「季氏」, 261~262쪽).
- 26)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전」, “弘嘗受『春秋左氏傳』於率更令郭瑜, 至楚子商臣之事, 廢卷而歎曰, ‘此事臣子所不忍聞, 經籍聖人垂訓, 何故書此?’ 瑜對曰, ‘孔子修『春秋』, 義存褒貶, 故善惡必書。褒善以示代, 貶惡以誡後, 故使商臣之惡, 顯於千載。’ 太子曰, ‘非唯口不可道, 故亦耳不忍聞, 請改讀餘書。’ 瑜再拜賀曰, ‘里名勝母, 曾子不入, 邑號朝歌, 墨子迴車。殿下誠孝冥資, 睿情天發, 凶悖之迹, 黜於視聽。循奉德音, 實深慶躍。臣聞安上理人, 莫善於禮, 非禮無以事天地之神, 非禮無以辨君臣之位, 故先王重焉。孔子曰, ‘不學禮, 無以立。’ 請停『春秋』而讀『禮記』。’ 太子從之”(2828쪽). 『책부원구』 권258, 「儲宮部」β, 孝友, 2934~2935쪽; 『책부원구』 권260, 「儲宮部」δ, 講學, 2956쪽 略同.
- 27)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現경 4년(659) 10월 조, “乙巳(2일), 皇太子加元服, 大赦天下, 文武五品已上子孫爲父祖後者加勳官一級, 大酺三日”(79쪽).
- 28)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전」, “龍朔元年, 命中書令·太子賓客許敬宗, 侍中·兼太子右庶子許圜師, 中書侍郎上官儀, 太子中舍人楊思儉等於文思殿博採古今文集, 摘其英詞麗句, 以類相從, 勒成五百卷, 名曰『瑤山玉彩』, 表上之。制賜物三萬

사하였고 나머지 신하들에게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²⁹⁾ 다시 조서를 내려 5일에 한 번 光順門으로 나가 정사를 처결하게 하였다.³⁰⁾ 총장 원년(668) [2월] 國學에서 釋采하고 顏回를 太子少師, 曾參을 太子少保에 추증하길 청하자, [고종이] 재가하였다[制可].³¹⁾

[같은 달]³²⁾ 때마침 有司에서는 고구려 정벌[征遼]에 [중군한] 병사들 가운데 도망[亡命]하였거나 도망한 뒤 [기한 내에] 바로 자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殊死하고 가족은 沒官하게 하였다. 이흥이 [표문을 올려] 간언하길, “[도망한] 병사들 중에는 병에 걸려 기한을 맞추지 못하였거나 혹은 [적의] 약탈을 받았거나 익사하거나 압사한 경우가 있음에도 軍法에서는 전사[戰亡]로 인한 것이 아니면 같은 부대의 [병사들을] 모두 연좌시키는데, 法家에서 도망[亡命]이라 하면 [그들의] 가족을 진짜 도망자

段, 敬宗已下加級·賜帛有差.”(2828~2829쪽), 『당회요』 권2, 「追諡皇帝·雜錄」, 略同.

29) 『당회요』 권36, 「修撰」, “[龍朔三年十月二日, 皇太子弘遣司元太常伯竇德玄, 進所撰『瑤山玉彩』五百卷上之, 詔藏書府”(766쪽). 한편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용삭 3년(663) 2월 조에는 “太子弘撰瑤山玉彩成, 書凡五百卷”(84쪽)라고 하고, 『구당서』 권190上, 「文苑上·孟利貞傳」에는 “受詔與少師許敬宗·崇賢館學士郭瑜·顧胤·董思恭等撰『瑤山玉彩』五百卷, 龍朔二年奏上之, 高宗稱善, 加級賜物有差”(4997쪽)라고 하여 『瑤山玉彩』의 편찬 시점을 달리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당회요』 권36, 「修撰」을 따른다. 『瑤山玉彩』에 관한 연구로는 劉全波, 「瑤山玉彩」編纂考, 『國學』 6, 2018 참조.

30) 『자치통감』 권201, 고종 용삭 3년(663) 10월 조, “辛巳朔, 詔太子每五日於光順門內視諸司奏事, [胡三省注: 『唐六典』, ‘大明宮, 紫宸殿內朝正殿也, 殿之南面曰紫宸門, 左曰崇明門, 右曰光順門.’] 其事之小者, 皆委太子決之”(6338쪽).

31)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총장 원년(668) 2월 조, 91쪽. 『全唐文』 권12, 高宗二, 「贈顏曾詔」, 中華書局, 152~153쪽. ‘釋采’란 ‘先聖先師’에 대한 제사의 특별한 명칭으로, ‘釋奠’이라고도 한다. 당대의 釋奠에 대해서는 中野昌代, 「唐代之釋奠について」, 『史窓』 58, 2001 참조.

32) 『당회요』 권2, 「追諡皇帝·雜錄」, “總章元年二月, 勅征遼軍逃亡限內不首, 及更有逃亡者, 身並處斬, 家口沒官. 孝敬上表切諫, 請免其配沒, 從之”(22쪽).

의 [가속과] 마찬가지로 몰관시킵니다. 『춘추좌전(傳)』에 이르기를, ‘무고한 자를 죽이느니 차라리 불경한 자를 놓치겠다’라고 하였으니,³³⁾ 신은 그들의 죄목[科]을 조목조목 변별하여[條別] 연루시키지[淪胥] 않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고종이] 재가하였다[詔可].³⁴⁾ [함형 2년(671) 정월] 황제가 東都로 행차하면서 조서를 내려 監國하게 하였다.³⁵⁾ 당시 關中에

33) 『신당서』에서는 『춘추좌전(傳)』이라고 하지만, 『책부원구』, 『자치통감』에서는 『상서(書)』라고 한다. 『자치통감』 권201, 충장 원년 12월 조, 胡三省注, “『書』大禹謨之言, 註云: 經, 常也. 寧失不常之罪, 不枉不辜之善”(6357쪽). 즉 『尙書』「大禹謨」, “帝曰, ‘皐陶, 惟茲臣庶, 罔或于予正. 汝作士, 明于五刑, 以刑五教, 期于予治. 刑期于無刑, 民協于中, 時乃功, 懋哉!’ 皐陶曰, ‘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罰弗及嗣, 賞延于世. 宥過無大,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好生之德, 洽于民心, 茲用不犯于有司.’ 帝曰, ‘俾子從欲以治, 四方風動, 惟乃之休’”(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編, 『尙書正義』 권4, 「大禹謨」, 109~110쪽).

34) 『구당서』 권86, 「孝敬皇帝弘傳」, “時有敕, 征邊遼軍人逃亡限內不首及更有逃亡者, 身並處斬, 家口沒官. 太子上表諫曰, ‘竊聞所司以背軍之人, 身久不出, 家口皆擬沒官. 亦有限外出首, 未經斷罪, 諸囚囚禁, 人數至多. 或臨時遇病, 不及軍伍, 緣茲怖懼, 遂即逃亡, 或因樵採, 被賊劫掠, 或渡海來去, 漂沒滄波, 或深入賊庭, 有被傷殺. 軍法嚴重, 皆須相儉. 若不給儉, 及不因戰亡, 即同隊之人, 兼合有罪. 遂有無故死失, 多注爲逃. 軍旅之中, 不暇勘當, 直據隊司通狀, 將作眞逃, 家口令總沒官, 論情實可哀愍. 『書』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伏願逃亡之家, 免其配沒.’ 制從之”(2829쪽). 『책부원구』 권261, 「儲宮部」26, 忠諫, 2962쪽. 한편 유사한 내용으로 『자치통감』 권201, 충장 원년 12월 조에는 “時有敕, 征遼軍士逃亡, 限內不首及首而更逃者, 身斬, 妻子籍沒. 太子上表, 以爲, ‘如此之比, 其數至多, 或遇病不及隊伍, 怖懼而逃, 或因樵採爲賊所掠, 或渡海漂沒, 或深入賊庭, 爲所傷殺. 軍法嚴重, 同隊恐并獲罪, 即舉以爲逃, 軍旅之中, 不暇勘當, 直據隊司通狀關移所屬, 妻子沒官, 情實可哀. 『書』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伏願逃亡之家, 免其配沒.’ 從之”(6357쪽)라고 한다.

35)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함형 2년(671) 정월 조, “春正月乙巳(7일), 幸東都. 留皇太子弘於京監國, 令侍臣戴至德·張文瓘·李敬玄等輔之. 唯以閻立本·郝處俊從. 甲子(26일), 至東都”(95쪽). 당대의 태자감국에 대해서는 郭鋒, 「試論唐代太子監國制度」, 『文史』 40, 1994(郭鋒, 『唐史與敦煌文獻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中村裕一, 「唐代的監國と文書」, 『唐令逸文の研究』, 東京: 汲古

기근이 들었는데, 이홍이 廡下 병사들의 식량에 느릅나무 껍질[榆皮]과 쑥부지깻이 열매[蓬實]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근심하여 家令寺³⁶⁾에 명하여 쌀을 지급하게 하였다.³⁷⁾

義陽·宣城 두 공주는 모친³⁸⁾으로 인해 掖庭[宮]에 유폐되어 40세가 되도록 시집가지 못하였는데, 이홍이 이를 듣고는 깜짝 놀라고 측은히 여겨 건의하여 下降을 청하였다. 무후가 노하여 바로 當上衛士 [權毅·王遂古]를 공주들의 배필로 삼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홍은 무후의] 충애를 잃었다.³⁹⁾ 또한 同州 沙苑의 [땅을] 貧民들에게 나누어 빌려주길 청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 [함형 4년(673) 2월]⁴⁰⁾ 때마침 [右衛將軍 裴居道の 딸] 裴[氏]를 황태자비로 들이자 有司에서 폐백[贄]에 흰 기러기를 쓰자고 상주하였는데, 마침 苑中에서 이를 잡자 황제가 기뻐하며 말하길 “漢은 붉은 기러기를 사로잡고 樂府歌를 지었다.⁴¹⁾ 지금 흰 기러기를 얻어 혼례의 폐백[婚贄]으로 삼게 되었는데, 혼인은 인륜의 으뜸이니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다. [10월]⁴²⁾ 혼례를 마치고

書院, 2005; 孫曉晨, 「試論唐代的太子監國」, 『湖州師範學院學報』 2010-6 등 참조.

36) 당대 태자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김호, 「唐代 太子府의 構造와 運用」, 『중국사연구』 36, 2005; 趙英華, 「唐前期東宮官研究」,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등 참조.

37)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건」, “時屬大旱, 關中饑乏, 令取廊下兵士糧視之, 見有食榆皮蓬實者, 乃令家令等各給米使足. 是時戴至德·張文瓘兼左庶子, 與右庶子蕭德昭同爲輔弼, 太子多疾病, 庶政皆決於至德等”(2829쪽).

38) 무측천에 의해 왕황후와 함께 폐출된 蕭淑妃를 말한다.

39)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675) 4월 조, “太子弘仁孝謙謹, 上甚愛之, 禮接士大夫, 中外屬心. 天后方逞其志, 太子奏請, 數逆旨, 由是失愛於天后. 義陽·宣城二公主, 蕭淑妃之女也, 坐母得罪, 幽于掖庭, 年踰三十不嫁. 太子見之驚惻, 遽奏請出降, 上許之. 天后怒, 即日以公主配當上翊衛權毅·王遂古”(6377쪽).

40)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함형 4년(673) 2월 조, 97쪽.

41) 『漢書』 권6, 「武帝本紀」, 태시 3년(前94) 2월 조, “令天下大酺五日. 行幸東海, 獲赤鴈, 作朱鴈之歌”(206쪽).

岐州에 曲赦하였다.⁴³⁾

황제는 일찍이 侍臣들에게 말하길 “이홍은 어질고 효순하며, 대신을 예우함[賓禮]함에 있어 일찍이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무후가 장차 야심을 드러내려[騁志] 할 때 이홍이 주청하여 수차례 [무후의] 뜻을 거슬렀다. 상원 2년(675) [4월] [황제의] 습벽宮 행차를 수종하였을 때 [綺雲殿에서] 짐살을 당해 흥거하니, 나이 24세였다.⁴⁴⁾ 천하 사람들이 애통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5월] 조서를 내려 말하길 “태자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沈瘵], 짐은 모름지기 그가 건강을 회복하면[瘵復] 장차 양위하려고 하였다. 이홍은 성품이 어질고 후덕하여 황명을 받고 나서 감정이 격해져 병이 나날이 심해졌다. 마땅히 이전의 명령을 펼치려 하니 시호를 ‘孝敬皇帝’라 하라.”라고 하였다.⁴⁵⁾ [8월] 緱氏(縣)에 매장하고 墓號를 ‘恭陵’이라 하였고 [喪葬] 制度는 모두 天子禮를 적용하였으

42)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함형 4년 10월 조, 98쪽.

43)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전」, “又召詣東都, 納右衛將軍裴居道女爲妃. 所司奏以白雁爲贊, 適會苑中獲白雁, 高宗喜曰, ‘漢獲朱雁, 遂爲樂府, 今獲白雁, 得爲婚贊. 彼禮但成謠頌, 此禮便首人倫, 異代相望, 我無慚德也.’ 裴氏甚有婦禮, 高宗嘗謂侍臣曰, ‘東宮內政, 吾無憂矣’”(2829~2830쪽).

44)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4월 조, “己亥(25일), 太子薨于合璧宮, 時人以爲天后 酖之也. 『考異曰』: 『新書』本紀云, ‘己亥, 天后殺皇太子.’ 『新』傳云, ‘后將逞志, 弘奏請數佛旨, 從幸合璧宮, 遇酖薨.’ 『唐曆』云, ‘弘仁孝英果, 深爲上所鍾愛, 自升爲太子, 敬禮大臣鴻儒之士, 未嘗居有過之地, 以請嫁二公主, 失愛於天后, 不以壽終.’ 『實錄』·『舊』傳皆不言弘遇酖. 按李泌對肅宗云, ‘高宗有八子, 睿宗最幼, 天后所生四子, 自爲行第, 故睿宗第四. 長曰孝敬皇帝, 爲太子監國, 仁明孝悌. 天后方圖臨朝, 乃酖殺孝敬, 立雍王賢爲太子.’ 『新書』蓋據此及『唐曆』也. 按弘之死, 其事難明, 今但云時人以爲天后鳩之, 疑以傳疑.』”(6377쪽).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상원 2년 4월 조, “己亥, 皇太子弘薨于合璧宮之綺雲殿”(100쪽). 아울러 韓昇, 「上元年間的政局與武則天逼宮」, 『史林』 2003-6 참조.

45)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5월 조, “戊申(5일), 下詔, ‘朕方欲禪位皇太子, 而疾遽不起, 宜申任命, 加以尊名, 可諡爲孝敬皇帝. [胡三省注: 帝子諡皇帝始此]’”(6377쪽). 『당대조령집』 권26, 追諡, 「皇太子諡孝敬皇帝制」, 85쪽.

며, 백관은 임시 제도에 따라 36일 뒤 釋服하게 하였다.⁴⁶⁾ 황제가 직접 『睿德紀』⁴⁷⁾를 지어 능 옆에 각석하게 하였다. 공릉 조영의 功費가 막대하였고 백성들이 노역을 싫어하여 돌을 던져 관할하던 관원[所部官司]을 해치고 잇달아 달아나기에 이르렀다.⁴⁸⁾ 황태자비는 흥거한 뒤 시호를 ‘哀皇后’라 하였다.⁴⁹⁾ 자식이 없었다. [예종] 영창 연간(689~690) 초 楚王 [李]隆基(즉 이후의 현종)를 후사로 삼았다.⁵⁰⁾ [신룡 원년(705) 6월] 중종이 [다시] 즉위하자 조서를 내려 신주를 太廟에 합사[祔]하고 [廟號]를 ‘義宗’이라 하였다. [현종] 개원 [6]년(718) [정월] 有司에서 상주하길, “효경황제는 마땅히 東都에 [別]廟를 세우고 시호로 別묘의 명칭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조서를 내려 재가하였다[詔可]. 이에 ‘의종’이라는 묘호를 파하였다.⁵¹⁾

46) 『자치통감』 권202, 상원 2년 8월 조, “庚寅(19일), 葬孝敬皇帝于恭陵。[胡三省注: 恭陵, 在洛州緱氏縣懷來山, 改名太平山]”(6378쪽). 『당대조령집』 권26, 冊諡文, 『冊諡孝敬皇帝文』, 86~87쪽.

47) 『전당문』 권5, 高宗五, 『孝敬皇帝睿德紀』, 184~186쪽.

48)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흥전』, “高宗親爲製睿德紀, 并自書之於石, 樹於陵側. 初, 將營築恭陵, 功費鉅億, 萬姓厭役, 呼嗟滿道, 遂亂投磚瓦而散”(2830쪽).

49) 황태자비 배씨가 언제 죽었는지는 미상이다. 다만 그녀의 시호를 ‘哀皇后’라 한 것은 중종 신룡 원년(705) 8월의 일이다(『구당서』 권7, 『중종본기』, 신룡 원년 8월 조, 140쪽).

50)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흥전』, “太子無子, 長壽中, 制令楚王諱繼其後”(2830쪽).

51)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흥전』, “中宗踐祚, 制祔于太廟, 號曰義宗, 又追贈妃裴氏爲哀皇后. 景雲元年, 中書令姚元之·吏部尚書宋璟奏言, ‘準禮, 大行皇帝山陵事終, 即合祔廟. 其太廟第七室, 先祔皇昆義宗孝敬皇帝·哀皇后裴氏神主. 伏以義宗未登大位, 崩後追尊, 至神龍之初, 乃特令升祔. … 孝敬皇帝恭陵既在洛州, 望於東都別立義宗之廟, 遷祔孝敬皇帝·哀皇后神主, …’ 詔從之. 開元六年, 有司上言, ‘孝敬皇帝今別廟將建, 享祔有期, 準禮, 不合更以義宗爲廟號, 請以本諡孝敬爲廟稱.’ 於是始停義宗之號”(2830~2831쪽); 『당회요』 권19, 『孝敬皇帝廟』, “至神龍元年六月十五日, 祔孝敬皇帝神主于廟, 號義宗. 景雲元年十二月二十六日, 禮儀使·中書令姚元之等奏稱, ‘… 孝敬皇帝恭陵既在洛陽州, 望於東都別立義宗之廟, 祔孝敬皇帝及哀皇后神主, …’ 從之. 開元六年正月二十六日, 將作大

황태자비는 바로 裴居道の 딸로 婦德이 있었다. 배거도는 황태자비로 인하여 內史·納言에 배수되고 太子少保·翼國公을 역임하였는데, [무측천 재초 원년(690) 8월] 흑리의 모함을 받아 하옥되어 죽었다.⁵²⁾

III. 章懷太子 李賢

章懷太子 [李]賢(654~684)⁵³⁾은 字가 明允으로,⁵⁴⁾ [고종의 여섯째 아들이다].⁵⁵⁾ 행동거지[容止]가 단정하고 진중하여 어려서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겨우 서너 살 때부터 한 번 책을 읽기만 하면 늘 잊지 않았는데,

匠韋湊上疏曰, ‘… 況孝敬皇帝位止東宮, 未嘗南面, 聖道誠冠于儲副, 德教不被于寰瀛, 立廟稱宗, 恐非合禮. … 望更令所司詳議, 務合于禮.’ 于是太常請以本諡孝敬爲廟稱, 從之. … ”(438~439쪽).

52) 『구당서』 권86, 「효경황제홍전」, “裴居道, 絳州聞喜人, 隋兵部侍郎鏡民孫也. 父熙載, 貞觀中爲尙書左丞. 居道以女爲太子妃, 則天時, 歷位納言·內史·太子少保, 封翼國公. 載初元年春, 爲酷吏所陷, 下獄死”(2831쪽). 『자치통감』 권204, 무측천 천수 원년(690) 8월 조, “甲寅, 殺太子少保·納言裴居道”(6467쪽).

53) 章懷太子 李賢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洪海安, 「唐章懷太子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을 참조할 만하다. 한편, 장희태자 이현의 생애에 대해서는 『구당서』·『신당서』 열전 외에도 장희태자묘에서 출토된 2점의 묘지명(『大唐故雍王墓誌銘』, 『大唐故章懷太子並妃清河韋氏墓誌銘』)이 있는데, 이들 묘지명은 周紹良 主編『唐代墓誌彙編』上, 上海古籍出版社, 1992, 神龍29, 1060~1062쪽 및 景雲20, 1130~1131쪽 참조. 아울러 장희태자 묘지명에 관한 연구로는 古今, 「唐章懷太子李賢墓志銘淺析」, 『四川文物』 1989-4; 蘇盈, 「唐章懷太子墓志銘文」, 『陝西檔案』 1994-3; 小林嶽, 「章懷太子李賢と二つの墓誌」, 『東方』 323, 2008 등이 있다.

54) 『大唐故章懷太子並妃清河韋氏墓誌銘』, “太子諱賢, 字仁, 隴西狄道人也”(1130쪽).

55) 『구당서』 권86, 「章懷太子賢傳」, “字明允, 高宗第六子也”(2831쪽).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영휘 5년(654) 12월 조, “戊午(17일), 發京師謁昭陵, 在路生皇子賢”(73쪽).

『論語』의 “현자를 좋아하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꾼다[賢賢易色]”는 구절⁵⁶⁾에 이르러 여러 차례 암송하였다. 황제가 이유를 묻자 대답하여 말하길, “마음속에서 진실로 이 구절이 좋습니다.”라고 하자, 황제가李世勣에게 말하여 그 조숙함과 명민함을 칭찬하였다.⁵⁷⁾ [고종 영희 6년(655) 정월] 처음 潞王에 봉해졌고⁵⁸⁾ [현경 원년(656) 6월] 幽州都督·雍州牧을 역임하였다.⁵⁹⁾ [용삭 원년(661) 9월] 沛王에 徙[封]되고 揚州大都督이 [더해졌고]⁶⁰⁾ [인덕 2년(665)] 右衛大將軍으로 승진[累進]하였다.⁶¹⁾ [함형 3년(672) 9월] ‘德’으로 개명하고 雍王에 徙[封]되었고 여전히 雍州牧·涼州大都督을 [兼]領하였으며 實封은 千戶였다.⁶²⁾ 상원 [2]년(675) [6

56) 『論語』「學而」, “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編, 『論語注疏』 권1, 「學而」, 8~9쪽).

57) 『구당서』 권86, 「장회태자현전」, “時始出閣, 容止端雅, 深爲高宗所嗟賞. 高宗嘗謂司空李勣曰, ‘此兒已讀得『尚書』·『禮記』·『論語』, 誦古詩賦復十餘篇, 暫經領覽, 遂即不忘. 我曾遺讀『論語』, 至『賢賢易色』, 遂再三覆誦. 我問何爲如此, 乃言性愛此言, 方知夙成聰敏, 出自天性.’”(2831쪽). 『당회요』 권4, 「儲君」, 47쪽.

58)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영희 6년(655) 정월 조, 73쪽.

59) 『구당서』 권86, 「장회태자현전」, “顯慶元年, 遷授岐州刺史. 其年, 加雍州牧·幽州都督”(2831쪽).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현경 원년(656) 6월 조, “岐州刺史·潞王賢爲雍州牧”(76쪽).

60) 『구당서』 권4, 「고종본기」상, 용삭 원년(661) 9월 조, “壬子(20일), 徙封潞王賢爲沛王. 是日, 以雍州牧·幽州都督·沛王賢爲揚州都督·左武候大將軍, 牧如故. 以洛州牧·周王顯爲并州都督. 是日, 敕中書門下五品已上諸司長官·尚書省侍郎并諸親三等已上, 並詣沛王宅設宴禮, 奏九部樂. 禮畢, 賜帛雜綵等各有差”(82쪽). 『당대조명집』 권34, 諸王·封建, 「冊揚州都督·沛王賢文」, 143쪽.

61) 『구당서』 권86, 「장회태자현전」, “麟德二年, 加右衛大將軍”(2831쪽).

62) 『구당서』 권86, 「장회태자현전」, “咸亨三年, 改名德. 徙封雍王, 授涼州大都督, 雍州牧·右衛大將軍如故, 食實封一千戶”(2831쪽).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함형 3년(672) 9월 조, “壬寅(14일), 沛王賢徙封雍王”(97쪽). 『당대조명집』 권38, 諸王·加實封, 「潞王·周王上柱國別食實封制」, 169쪽.

일] 다시 이름을 ‘賢’이라 하였다.⁶³⁾

이때 황태자 [이훙이] 흥거하니 그 해(675) 6월 이현을 황태자에 책립하고 [천하에 大赦하였다.] 이윽고 조서를 내려 監國하게 하였는데, 이현이 [정사를] 처결함에 있어 매우 명확하고 신중하여 조정에서 칭양하자 [의봉 원년(676)] 황제가 手敕을 내려 칭찬하고 [賞賜하였다.⁶⁴⁾ [12월] 이현이 다시 左庶子 張大安, 洗馬 劉訥言, 洛州司戶參軍事 格希玄, 學士 許叔牙·成玄一·史藏諸·周寶寧 등의 여러 유학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范曄의 『後漢書』를 주석하게 하였다.⁶⁵⁾ [표문을 올려] 책을 상주하자 황제가 비단[物] 수만 단을 후하게 하사하였다.⁶⁶⁾

당시 正諫大夫 明崇儼이 左道로 무후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명승엄이 英王(즉 이후의 중종)은 태종을 닮았고 相王(즉 이후의 예종)은 귀한 [관상이라고] 말하자 이현이 [이를] 듣고 그를 증오하였다. 宮人들 가운데 이현이 무후의 언니인 韓國夫人의 소생이라고 전하는 자가 있어 이현이 더욱 의심하였고, 무후가 『少陽政範』, 『孝子傳』을 편찬하여 이현에게 내리면서 수차례 서신으로 꾸짖으며 단속하자 더욱 불안해하였다. 조로 [원년(679) 5월] 천자가 東都에 있을 때 명승엄이 도적들에게 살해되

63) 『당회요』 권4, 「儲君」, “上元二年六月三日, 改名賢, 冊爲皇太子”(47쪽).

64) 『구당서』 권86, 「장희태자현전」, “賢處事明審, 爲時論所稱. 儀鳳元年, 手敕褒之曰, ‘皇太子賢自頃監國, 留心政要, 撫字之道, 既盡於哀矜, 刑網所施, 務存於審察. 加以聽覽餘暇, 專精貴典, 往聖遺編, 咸窺壺奧, 先王策府, 備討菁華. 好善載彰, 作貞斯在, 家國之寄, 深副所懷. 可賜物五百段.’”(2831~2832쪽).

65) 『後漢書』李賢注에 대해서는 周曉瑜, 「李賢注《後漢書》起訖時間考」, 『文史哲』 1991-5; 洪海安, 「章注《後漢書》的歷史貢獻」, 『社會科學家』 2009-5 참조.

66) 『구당서』 권86, 「장희태자현전」, “賢又招集當時學者太子左庶子張大安·洗馬劉訥言·洛州司戶格希玄·學士許叔牙·成玄一·史藏諸·周寶寧等, 注范曄《後漢書》, 表上之, 賜物三萬段, 仍以其書付祕閣”(2832쪽).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의봉 원년(676) 12월 조, “丙申(3일), 皇太子賢上所注後漢書, 賜物三萬段”(102쪽).

자⁶⁷⁾ 무후가 이현의 음모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태자의 음모를 적발하게 하고 조서를 내려 薛元超·裴炎·高智周에게 함께 이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東宮의 [馬坊에서] 갑옷 수백 수가 나왔다. 황제는 평소 이현을 총애하여 그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무후가 말하길 “이현은 역심을 품었으니 大義滅親해야지 용서[赦]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영릉 원년(680) 8월] 마침내 폐위하여 庶人으로 삼고 [동도] 天津橋에서 갑옷을 불살랐다. 장대안은 普州刺史로 폄출하고 유납언은 振州로 유배하였는데, 연루된 자가 10여 인이었다.⁶⁸⁾ 개요 원년(681) [11월] 이현을 巴州로 옮겼다.⁶⁹⁾

67) 『자치통감』 권202, 고종 조로 원년(679) 5월 조, “偃師人明崇儼, 以符呪幻術爲上及天后所重, 官至正諫大夫. 五月, 壬午(3일), 崇儼爲盜所殺, 求賊, 竟不得. 『考異』曰: 『御史臺記, 鄭仁恭, 本滎陽人也, 自監察累遷刑部郎中. 儀鳳中, 明崇儼以奇術承恩寵, 夜遇刺客, 敕三司亟推鞠, 妄承引, 連坐者甚衆. 高宗怒, 促有司行刑, 仁恭奏曰, 『此輩必死之囚, 願假其數日之命.』高宗曰, 『卿以爲枉邪?』仁恭曰, 『臣識慮淺短, 非的以爲枉, 恐萬一非實, 則怨氣生, 遂緩之.』旬餘, 果獲賊矣. 朝廷稱之.』今從『實錄.』贈崇儼侍中”(6390쪽).

68) 『자치통감』 권202, 영릉 원년(680) 8월 조, “太子賢聞宮中竊議, 以賢爲天后姊韓國夫人所生, 內自疑懼. 明崇儼以厭勝之術爲天后所信, 常密稱‘太子不堪承繼, 英王貌類太宗’, 又言‘相王相最貴’. 天后嘗命北門學士撰『少陽正範』及『孝子傳』以賜太子, 又數作書誚讓之, 太子愈不自安. 及崇儼死, 賊不得, 天后疑太子所爲. 太子頗好聲色, 與戶奴趙道生等狎昵, 多賜之金帛, 司議郎韋承慶上書諫, 不聽. 天后使人告其事, 詔薛元超·裴炎與御史大夫高智周等雜鞠之, 於東宮馬坊搜得皂甲數百領, 以爲反具, 道生又款稱太子使道生殺崇儼. 上素愛太子, 遲回欲宥之, 天后曰, ‘爲人子懷逆謀, 天地所不容, 大義滅親, 何可赦也!’ 甲子(22일), 廢太子賢爲庶人, 遣右監門中郎將令狐智通等送賢詣京師, 幽於別所, 黨與皆伏誅, 仍焚其甲於天津橋南以示士民. … 乙丑(23일), 立左衛大將軍·雍州牧英王哲爲皇太子, 改元, 赦天下. … 流訥言於振州. … 貶眞行爲睦州刺史, 審行爲渝州刺史. … 左庶子·中書門下三品張大安坐阿附太子, 左遷普州刺史. 其餘宮僚, 上皆釋其罪, 使復位, 左庶子薛元超等皆舞蹈拜恩, 右庶子李義琰獨引咎涕泣, 時論美之”(6397~6398쪽).

69) 『구당서』 권86, 「장희태자현전」에는 “永淳二年, 遷於巴州”(2832쪽)이라고 하지만, 『자치통감』 권202, 개요 원년(681) 11월 조, 6405쪽; 『구당서』 권5, 「고종본기」하, 108쪽; 『신당서』 권3, 「고종본기」, 개요 원년 11월 조, 77쪽 등에 의하면 개요 원

[문명 원년(684) 2월] 무후가 정사를 다스리게 되자 조서를 내려 左金吾將軍 丘神勣에게 [과주로 가서] 이현의 집을 검속[檢衛]하게 하고는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니, 나이 34세⁷⁰⁾였다.⁷¹⁾ [3월] 무후가 顯福門에서 舉哀한 뒤 구신적을 疊州刺史로 펴출하고 [이현의] 옛 왕작(즉 옹왕)을 追復하였다.⁷²⁾ [중종] 신룡 [2]년(706)司徒에 추증하였고 사자를 보내 영구를 영접하게 하고 乾陵에 陪葬하였다.⁷³⁾ [경운 원년(710) 6월] 예종이 즉위하여 황태자 및 시호를 추증하였다(즉 ‘장희태자’).⁷⁴⁾ 세 아들이 있었는데, 光順·守禮·守義이다.

년, 즉 영룡 2년(681) 11월의 일이다.

- 70) 장희태자의 묘지명에서는 사망 시 나이가 31세라고 하는데, 장희태자가 영희 5년(654) 출생하였다고 한 『구당서』 「고종본기」의 내용으로 볼 때 묘지명의 기록이 옳다고 생각된다. 한편, 장희태자 이현의 죽음에 대해서는 高文文, 「章懷太子李賢死因質疑與揣測」, 『唐史論叢』 23, 2016 참조.
- 71) 『자치통감』 권203, 무측천 광택 원년(684) 2월 조, “辛酉(9일), 太后命左金吾將軍 丘神勣詣巴州, 檢校故太子賢宅以備外虞, 其實風使殺之”(6419쪽).
- 72) 『자치통감』 권203, 광택 원년 3월 조, “丘神勣至巴州, 幽故太子賢於別室, 逼令自殺. 『考異』曰: 『則天實錄』, 賢死在二月丘神勣往巴州下. 『舊』本紀, 在三月. 『唐曆』, 遣神勣·舉哀·追封皆有日. 今從之.] 太后乃歸罪於神勣, 戊戌(16일), 舉哀於顯福門, 貶神勣爲疊州刺史. 己亥(17일), 追封賢爲雍王. 神勣尋復入爲左金吾將軍”(6419쪽).
- 73) 「大唐故雍王墓誌銘」, “神龍二年, 又加制命, 冊贈雍王, 禮盛漢蒼, 恩逾晉獻, 乃勅金紫光祿大夫·衛尉卿·上柱國·西河郡開國公楊元球, 正義大夫·行太子率更令·騎都尉·韓國公賀蘭琬監護喪事, 冊贈司徒, 仍令陪葬乾陵, 以神龍二年七月一日遷窆禮也”(1061쪽).
- 74) 『자치통감』 권209, 예종 경운 원년(710) 6월 조, 6650쪽.

